

화성시복지재단 2026년 3차 직원 공개채용(블라인드) 변경 공고

‘시민의 요구를 이해하고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포용적 복지도시 구현’을 위해 재단법인 화성시복지재단에서 근무할 전문성과 역량 있는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26년 8월 19일

재단법인 화성시복지재단 대표이사

1. 채용개요

○ 채용 상세분야 및 인원

근무부서	고용형태	직급	인원	세부내용	임용예정일
사회공헌부 (A)	계약직 (휴직대체)	행정직6급 상당	1명	· 모금개발 지원 및 사회공헌 홍보 등 · 기타 대표이사가 분장하는 업무 · 근무기간: 2026. 9. 9. ~ 2027. 11. 17.	2026. 9. 9.
고립예방부 (B)		행정직6급 상당	1명	· AI 안부확인 서비스 운영실무 · 관제 및 데이터 관리, 사업 홍보 등 · 기타 대표이사가 분장하는 업무 · 근무기간: 2026. 10. 6. ~ 2027. 12. 31.	2026. 10. 6.
정책연구부 (C)		연구위원 3급 상당	1명	· 조사·연구사업 · 기타 대표이사가 분장하는 업무 · 근무기간: 2026. 9. 9. ~ 2027. 12. 31.	2026. 9. 9.

○ 근무시간 및 보수

구분	주요내용
근무시간	· 재단 「복무규정」에 따름(주 40시간)
보수	· 재단 「보수규정」에 준함 ※ 연구직의 경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임기제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8급(상당) 상·하한액 합산액의 50%

※ 육아휴직자의 상황에 따라 휴직대체자 근로계약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음.

※ 최종합격자는 재단의 전략적 조직개편 및 순환보직 등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임용 시기 또는 부서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자에게 사전에 개별 안내할 예정임.

2. 응시자격

- 공통 자격요건
 - 이종취업자가 아닌 자(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준)
 - 재단 채용규정 제22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재단 정년(만60세)미만인 자
- 행정직 직급별 자격요건

행정직 경력경쟁 채용별 자격기준 구분표									
임용예정직급			1급 (전문계약직 특급)	2급 (전문계약직 가급)	3급 (전문계약직 나급)	4급 (일반계약직 다급)	5급 (일반계약직 라급)	6급 (일반계약직 마급)	
직무분야			공무원	서기관	사무관	주사	주사보	서기	서기보
			경찰공무원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군인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관련직무분야 (사립학교법 제31조제1항제2호) (교육대학교·전문대학 포함)	대학(교육대학교·전문대학 포함)교원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	-	-	-	
	초·중·고 교원 및 그 밖의 교육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적용 대상자	24호봉 이상	16호봉 이상	12호봉 이상	11호봉 이하	-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적용 대학봉급액란 적용대상자	17호봉 이상	11호봉 이상	7호봉 이상	6호봉 이하	-	-	
		「공무원보수규정」별표 12 중 전문대학봉급액란 적용대상자	19호봉 이상	13호봉 이상	9호봉 이상	8호봉 이하	-	-	
관련직무분야 학위 소지자			박사(4년)	박사(3년) 석사(6년)	학사(10년)	학사(8년)	학사(3년)	학사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			-	기술사 사회복지사 2급이상(12년)	기능장 기사(6년) 산업기사(9년) 대한민국명장 사회복지사 2급이상(10년)	기사(3년) 산업기사(6년) 사회복지사 2급이상(8년)	기사 산업기사(3년) 기능사(4년) 국제기능 올림픽대회 입상자(2년) 사회복지사 2급이상(3년)	사회복지사 2급이상	
관련직무분야 근무경력자			-	-	관련직무분야 근무 경력 10년 이상	관련직무분야 근무 경력 8년 이상	관련직무분야 근무 경력 3년 이상	관련직무분야 근무 경력 1년 이상	

- 비고 1. 1급(특급)부터 5급(라급)까지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 ‘교육공무원(사립학교교원포함)’은 위 표의 구분에 따른 해당 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그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공무원’ 경력은 2년 이상이어야 한다.
2. 6급(마급)의 경우 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군인’은 위 표의 구분에 따른 해당 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그 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3. ‘관련직무분야 학위 소지자’ 및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에 따른 경력은 해당 학위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후 ()안의 기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4. ‘관련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와 관련직무분야 근무 경력은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의 범위내에서 임용권자가 미리 정하며, 관리자는 기관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사람이어야 한다.
5.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관련법에 따라 해당등급 기준 이상의 상위 자격증으로 자격을 충족하거나 해당 등급 이상의 등급 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충족한 것으로 본다.
6. 운영시설 및 사업에 따라 법률 등에 별도의 종사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률 등의 자격기준을 따를 수 있다.
- ※비고4와 관련하여 관련직무분야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중 ‘경력인정 범위 가이드라인’을 준용함

○ 연구직 직급별 자격요건

연구직 경력경쟁 채용별 자격기준 구분표	
직급	자격기준
연구위원 (3급)	· 사회정책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사회정책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연구 또는 실무경력

○ 결격사유

「화성시복지재단 채용규정」제22조(결격사유) 최종합격자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하며, 임용 당시 그에 해당한 것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인사 규정」제34조제1항제6호에 따라 면직시킬 수 있다. ※참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의 결격사유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9. 미성년자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 다.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 라.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 마.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전형일정

진행절차	진행일자		비고
공고 및 접수기간	8. 19.(수) ~ 8. 29.(토)		· 채용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서류심사	8. 30.(일) ~ 8. 31.(월)		· 채용자격 적격여부 심사
서류합격자 발표	9. 1.(화)		· 면접심사 세부일정 안내 (채용전용 홈페이지 게시)
면접심사	9. 3.(목)		· 장소: 화성시 관내 지정 시험장 (세부사항 추후 안내)
최종합격자 발표	9. 7.(월)		· 임용등록서류 및 세부일정 안내 (채용전용 홈페이지 및 재단 게시판 게시)
임용후보자 등록	9. 7.(월) ~ 9. 8.(화)		· 이메일 및 방문 접수
임용예정일	사회공헌부(A) 정책연구부(C)	9. 9.(수)	· 모집 분야(근무부서)별 상이
	고립예방부(B)	10. 6.(화)	

※ 상기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응시원서 접수

○ 제출서류

구분	서류목록		제출방법
서류접수	공통 필수	· 블라인드 채용 입사지원서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단 채용홈페이지 온라인 제출
	행정직(A, B)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사회복지사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채용분야 자격증 소지자(해당자에 한함) · 최종학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연구직(C)	· 학위논문요약서(석사·박사) · 최종학력증명서 · 연구실적 목록 · 연구실적 요약서	
	해당자	· 경력사실 확인서 · 각종 자격증 사본 · 가점 관련 증빙서류	

- ※ 응시자의 부주의로 인한 서류 미제출시 불합격 처리함.
- ※ 모든 자격은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함.
- ※ 경력사항은 경력증명서 상 담당업무, 근무기간, 직위(직급)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 ※ 단, 경력증명서 상 담당업무가 미기재되었거나 불분명한 경우, [서식1] ‘경력사실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하며, 최종 합격 후 허위로 판명될 경우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 별도 발급일 지정이 없는 증빙서류 일체는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발급분만 인정함.
- ※ 모든 서류는 파일업로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판독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부적격)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음.

5. 심사방법

○ 전형별 심사기준

구분	진행내용
서류심사	· 대상: 제출서류 완납 응시자(손상 및 인식불가 파일 심사제외) · 심사기준: 응시자의 자격기준 적격심사(적합하면 모두 합격처리)
면접심사	· 대상: 서류심사 합격자 · 심사기준: 직무적합성,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구성원과 결합력, 직업윤리 등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평가 · 합격기준: 면접심사 평균점수 고득점자(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최종합격	-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중에서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까지 한다.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1. 취업지원 대상자 2. 필기시험 고득점자 3. 인·적성검사 고득점자 4. 자원봉사점수 고득점자 · 원활한 재단 운영을 위해 직급별 모집인원 2배수 내에서 예비합격자 임용 가능 ※ 최종합격자 발표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함

○ 채용시험 가점기준(재단 채용규정 제18조 관련)

구분	부가점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관련 법령에 따라 각 전형단계별 만점의 5%~10%
자원봉사활동	면접단계 취득점수의 1% ~ 5% 누적 봉사시간 500시간 이상 5% 누적 봉사시간 400시간 이상 4% 누적 봉사시간 300시간 이상 3% 누적 봉사시간 200시간 이상 2% 누적 봉사시간 100시간 이상 1%

- ※ 법정가점 적용 세부기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름
- ※ 자원봉사활동 적용 세부기준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 및 「국가유공자 등 채용시험 가점제도 관련 가이드라인」 가점합계 상한제에 따른 합격자 결정에 따름
- ※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자는 그 채용시험 선발예정인원의 30퍼센트(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유의사항

- 모집분야별 **중복 지원은 불가**하며, 중복 접수시 일괄 불합격 처리함.
-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 지원서 작성시 직·간접적으로 본인의 **출신지, 가족관계, 학력** 등 개인적인 인적사항이 입력될 경우 불이익(부적격)을 받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 및 재단 감사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법」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음.
- 별도의 반환 요청을 하지 않은 서류들에 대해서는 5년간 재단 감사 목적으로 재단에서 별도로 보관하며 5년 이후 지체없이 파기함.
- 채용절차 진행시 서류누락, 입력착오, 저장 후 미제출 등으로 인해 발생한 불합격이나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공개모집 결과 응모자 수가 모집분야별 임용예정 직위 수의 **2배수에 미달**되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본 채용과 관련하여 실시된 평가 결과(서류·면접심사 등)는 일체 **공개하지 않음**.
- 본 채용 일정은 재단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재단의 전략적 조직개편 및 순환보직 등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임용 시기 또는 부서 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자에게 사전에 개별 안내함.
- 문의: 재단법인 화성시복지재단 경영지원부(☎ 031-296-9827)

7. 이의제기 신청

- 채용결과 및 과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접수
 - 대상: 2026년도 재단법인 화성시복지재단 제3차 직원 공개채용 지원자
- 접수방법: 이의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hj0125@hcare.kr)로 접수
- 이의신청서 양식: 붙임문서 참조
- 최종합격자 발표 후 3일 이내(합격자 발표일자 포함) 접수